

사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제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5.2.2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5. 1. 5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5. 1. 25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2005-4호)
- 다. 2005. 2. 2 : 제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(건설과장 강상민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명을 변경
 - 사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
⇒ 사천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
-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용어 정비
 - 농지개량사업 ⇒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

다. 근거법령

- 농어촌정비법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영태)

-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것으로
 - 조례 명을 사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에서 「사천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」로 명칭을 변경하고,
 - 조례의 조문내용 중 농지개량사업을 「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」으로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
-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절차 및 체계, 상위법령과의 관계, 용어 및 조문의 정리,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전원찬성)

7. 소수의견 : 없음